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2021. 1. 12.

양형위원회

I. 개관

1. 의의

- ▣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 개인의 생활이나 업무의 근거가 되는 일정한 구획된 장소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2. 특징

- ▣ 주거침입범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저질러지는 일이 많고, 주된 범죄와 주거침입범죄는 원칙적으로 실제적 경합관계임
- 예외적으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형법 제330조),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1항) 등과 같이 주거침입죄와 다른 범죄가 결합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단순일죄가 성립함
- ▣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면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상한과 하한을 모두 권고하는 실익이 있음
-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고, 상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권고하지 않음
- 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면, 양형기준이 설정된 다수범죄 사이의 처리기준에 따라 상향된 형량범위 상한까지 권고할 수 있음

3. 보호법익

- ▣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함
 - 주거의 자유라는 특수한 성질의 인격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이고,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음
- ▣ 다만 주거·신체수색죄(형법 제321조)는 ‘사생활의 자유 및 신체의 완전성’ 을 보호법익으로 함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1. 대상범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가. 형법(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적용법조	죄명	구성요건	법정형	비고
§ 319	①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	3년 ↓ 징역 또는 500만 원 ↓ 벌금	기본적 구성요건
	② 퇴거불응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불응		
§ 320	특수(제319조 각 죄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함	5년 ↓ 징역	가중적 구성요건
§ 321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	3년 ↓ 징역	독립적 구성요건
§ 322	(제319조 내지 제321조 각 죄명)미수	제319조 내지 제321조의 각 미수		미수범 처벌

나. 특별법

적용법률	조항	구성요건	법정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¹⁾	§2② 1호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함(공동주거침입)	4년 6월 ↓ 징역 또는 750만 원 ↓ 벌금
폭력행위처벌법	§2③ 1호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형법 제319조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누범주거침입)	7년 ↓ 징역
폭력행위처벌법	§3④ 1호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형법 제320조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누범특수주거침입)	1년 ↑ 12년 ↓ 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²⁾	§12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불응(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1년 ↓ 징역 또는 1,000만 원 ↓ 벌금

■ 헌법재판소는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한 폭력행위처벌법의 일부 가중처벌 규정³⁾은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⁴⁾을 함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폭력행위처벌법은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됨

- 상습주거침입 등 상습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제2조 제1항), 휴기휴대주거침입 등 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제3조 제1항), 휴기휴대주거침입 등 상습특수폭력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제3조 제3항)이 각 삭제됨
- 공동주거침입 등 공동폭력범죄 가중처벌 규정, 누범주거침입 및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누범 가중처벌 규정(제2조 제2항, 제3항 및 제3조 제4항)

1)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함

2)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3) 구 폭력행위처벌법(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휴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 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병합) 사건

이 정비됨

- 한편 앞서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법에 특수상해(제258조의2), 특수강요(제324조 제2항), 특수공갈(제350조의2)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상습범 관련 조항은 신설되지 않음. 결국 주거침입 범죄는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 없음

2. 양형기준 설정범위

가.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된 범죄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건조물·선박·항공기·방실) 침입
-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
-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건조물·선박·항공기·방실) 침입·퇴거불응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공동주거침입·퇴거불응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누범주거침입·퇴거불응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누범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
- 형법 제321조 (신체·주거·건조물·자동차·선박·항공기·방실) 수색
 - 위 범죄들은 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에 규정된 죄로서, 주거침입범죄의 기본 형태(형법)이거나 그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폭력행위처벌법)이므로,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

나. 양형기준 설정범위에서 제외된 범죄

- 형법 제322조 미수범
 - 살인범죄 외에 아직까지 미수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한 사례가 없음

- 다양한 미수범의 행위 태양 또는 범의 침해 정도를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어려움 있음
- 기수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적정한 양형 가능
-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 주거침입죄와 행위태양은 유사하나 기본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보호범의익이나 죄질에서 차이가 있음 ☞ 주거침입범죄군에 포함시키기 적절하지 않음
 - 법정형이 낮고(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주거침입범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침입범죄로 기소될 것이므로 양형기준 설정의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음

III. 범죄유형 분류

1. 일반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함시켜야 함
- 개별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유형에 속한 범죄들의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들이 공통되어야 함

2. 대유형 분류

- ▣ **기본적 구성요건(일반적 기준)과 가중적 구성요건(누범·특수 주거침입 등)의 2개 대유형으로 분류**
 -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 사이에 법정형, 행위 태양, 죄질 등

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일부 양형인자(예를 들어 동종 누범)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 재물손괴범죄, 폭력범죄 중 상해죄의 경우에도 기본적 구성요건과 가중적 구성요건을 별도의 대유형으로 분류함

3. 소유형 분류

가. 기본적 구성요건(일반적 기준)의 소유형 분류

▣ 형법상 구성요건대로 별개 소유형으로 분류

- 기본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형법 제319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이 동일하나, 행위 태양이나 죄질 및 양형통계 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따라서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를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함
- 형법 제321조 주거·신체 등 수색은 구성요건·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별개의 소유형으로 분류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공동주거침입·퇴거불응죄는 기본적 구성요건의 각 해당 소유형에 포함하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를 일반 주거침입·퇴거불응의 가중인자로 반영함(폭력범죄, 손괴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의 예를 참고)

나. 가중적 구성요건(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의 소유형 분류

▣ 각 가중적 구성요건대로 별개 소유형으로 분류

- 형법 제320조 특수(주거·건조물·선박·항공기·방실) 침입·퇴거불응,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1호 누범주거침입·퇴거불응,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1호 누범특수주거침입·퇴거불응 등 각 구성요건대로 3개 소유형으로 분류함

-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가중적 구성요건의 경우에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 사이의 차이보다는 가중적 양형요소의 존재로 인하여 불법의 정도가 무겁게 평가된 것이므로,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을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음

4. 최종 유형분류

01 ¹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거침입			
2	퇴거불응			
3	주거신체수색			

02 ¹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주거침입 등			
2	누범주거침입 등			
3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IV. 형량 범위 검토

1. 권고 형량 범위 설정 기준

▣ 고려사항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양형

에 대한 일반 국민의 건전한 인식을 반영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할 수 있음

- 경험적 접근방식을 기초로 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유형에서는 일정한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형량범위를 상향하고, 양형기준 전체의 체계 적합성을 고려하여 형량범위를 세부 조정함
-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함

2. 형량 범위 검토

가. 대유형 1 일반적 기준

1) 참고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 협박 (형법 § 283① // 3년↓ or 500만↓ or 구류, 과료)

-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2월-1년	4월-1년6월

▣ 재물손괴 (형법 § 366 // 3년↓ or 700만↓)

-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손괴 등	-6월	4월-10월	8월-1년6월

▣ 유기 (형법 § 271① // 3년↓ or 500만↓)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유기·학대	-8월	2월-1년	6월-1년6월

2) 형량 분포⁵⁾

▣ 주거침입(합계 395건), 퇴거불응(합계 33건)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1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건조물침입	수	-	1	1	26	3	16	7	2	4	-	-	1	-	-	61
	비율	-	1.6	1.6	42.6	4.9	26.3	11.5	3.3	6.6	-	-	1.6	-	-	100.0
방실침입	수	-	-	-	7	-	8	1	-	-	-	-	1	-	17	
	비율	-	-	-	41.2	-	47.1	5.9	-	-	-	-	5.9	-	100.0	
주거침입	수	-	1	6	83	6	121	44	16	17	-	1	1	5	1	302
	비율	-	0.3	2.0	27.5	2.0	40.1	14.6	5.3	5.6	-	0.3	0.3	1.7	0.3	100.0
퇴거불응	수	-	-	1	16	1	6	-	-	1	-	-	-	-	25	
	비율	-	-	4.0	64.0	4.0	24.0	-	-	4.0	-	-	-	-	100.0	
폭력행위처벌법위반 (공동주거침입)	수	-	-	-	10	-	2	3	-	-	-	-	-	-	15	
	비율	-	-	-	58.8	-	23.5	17.7	-	-	-	-	-	-	100.0	
폭력행위처벌법위반 (공동퇴거불응)	수	-	-	-	5	-	3	-	-	-	-	-	-	-	8	
	비율	-	-	-	62.5	-	37.5	-	-	-	-	-	-	-	100.0	
전체	수	0	2	8	147	10	156	55	18	22	0	1	2	6	1	428
	비율	0.0	0.5	1.9	34.3	2.3	36.5	12.9	4.2	5.1	0.0	0.2	0.5	1.4	0.2	100.0

● 전체 평균 형량 6.23월(주거침입 6.35월, 퇴거불응 4.79월)

- 기본범죄(공동주거침입, 공동퇴거불응 불포함) 평균 형량 6.30월(주거침입 6.40월, 퇴거불응 4.80월)
- 공동주거침입 5.07월, 공동퇴거불응 4.75월

▣ 주거신체수색(합계 11건)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1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건조물수색	수	-	-	2	2	-	-	-	-	-	-	-	-	-	-	4
	비율	-	-	50.0	50.0	-	-	-	-	-	-	-	-	-	-	100.0
방실수색	수	-	1	-	-	-	-	-	-	-	-	-	-	-	1	
	비율	-	100.0	-	-	-	-	-	-	-	-	-	-	-	100.0	
자동차수색	수	-	2	-	2	-	1	-	-	-	-	-	-	-	5	
	비율	-	40.0	-	40.0	-	20.0	-	-	-	-	-	-	-	100.0	
신체수색	수	-	-	-	1	-	-	-	-	-	-	-	-	-	1	
	비율	-	-	-	100.0	-	-	-	-	-	-	-	-	-	100.0	
전체	수	0	3	2	5	0	1	0	0	0	0	0	0	0	11	
	비율	0.0	27.3	18.2	45.5	0.0	9.1	0.0	0.0	0.0	0.0	0.0	0.0	0.0	100.0	

5)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제7기 양형기준 대상범죄 분석 II(2020. 9. 14.)를 근거로 하되, 실제 해당 판결문을 찾아 통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오류를 수정하여 제시함. 이하 주거침입 범죄 형량 분포에 대한 통계는 모두 같음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1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비율	0.0	27.3	18.2	45.4	0.0	9.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 평균 형량 3.45월

3)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주거침입	-8월	6월-1년	10월-2년
2	퇴거불응	-6월	4월-10월	8월-1년6월
3	주거신체수색	-6월	4월-1년	8월-2년

▣ 전체적인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

- ‘주거침입 > 퇴거불응 > 주거신체수색’ 순으로 형량분포(2월-2년, 3월-1년, 2월-6월), 평균형량(6.35월, 4.79월, 3.45월)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 위 순서대로 형량범위에 차등을 두되, 소유형 3 주거신체수색은 법정형 중 징역형이 주거침입·퇴거불응과 동일하나 벌금형은 법정형에서 제외되어 있어 오히려 무겁게 평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

▣ 기본영역

- 각 평균형량이 기본 영역의 하한과 상한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기본영역 하한을 6월, 4월로 각 설정하고, 형량분포, 유사 범죄의 양형기준, 법정형 등을 고려하여 기본영역을 ‘6월-1년’, ‘4월-10월’, ‘4월-1년’ 으로 각각 설정

▣ 가중영역

- 주거침입 유형의 가중 영역 상한은 통계자료상 최고형량인 2년으로 설정하고, 법정형이 더 무겁다고 평가할 수 있는 주거신체수색 유형은 그에 준하며, 퇴거불응 유형은 통계자료상 최고형량(퇴거불응: 1년)을 고려

하되 규범적 조정을 통하여 1년 6월로 설정. 가중영역 하한은 기본 영역과 일부 중첩이 되도록 10월, 8월로 각각 설정 ⇒ 결국 가중 영역은 ‘10월-2년’, ‘8월-1년6월’, ‘8월-2년’

■ 감경영역

- 감경 영역은 형량분포범위, 유사 범죄 양형기준, 법정형 등 고려하여 ‘8월 이하’, ‘6월 이하’ 로 각 설정

나. 대유형 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1) 참고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 특수주거침입 등(5년↓)

- ① 특수폭행 (형법 §261 // 5↓ or 1,000만↓)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특수폭행·특수존속폭행	2월-1년2월	4월-1년10월	6월-2년4월

- ② 체포·감금 (형법 §276① // 5↓ or 700만↓)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체포·감금	-8월	6월-1년	8월-2년

- 특수범은 특별가중인자로 적용

- ③ 강요 (형법 §324① // 5↓ or 3,000만↓)

-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요	-8월	6월-1년	10월-2년

- 특수범은 특별가중인자로 적용

④ 특수손괴 (형법 §369① // 5 ↓ or 1,000만 ↓)

-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특수손괴 등	-8월	6월-1년2월	8월-2년

■ 누범주거침입 등(7년 ↓)

① 누범폭행 (폭력행위처벌법 §2③1호 // 7년 ↓)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누범·특수폭행	2월-1년2월	4월-1년10월	6월-2년4월

② 누범협박 (폭력행위처벌법 §2③1호 // 7년 ↓) & 특수협박 (형법 §284 // 7년 ↓ or 1,000만 ↓)

- 협박 범죄 - 0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누범·특수협박	2월-1년	4월-1년6월	6월-2년

③ 누범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 §2③1호 // 7년 ↓)

- 손괴 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누범·특수손괴 등	-8월	6월-1년2월	8월-2년

④ 상해 (형법 §257① // 7년 ↓ or 10년 ↓ 자 or 1,000만 ↓)

- 폭력 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0월	4월-1년6월	6월-2년6월

⑤ 유기·학대치상 (형법 §275①전문 // 7년 ↓)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유기·학대치상	2월-1년6월	6월-2년	1년-3년

▣ 누범특수주거침입 등(1년-12년)

① 누범특수폭행 (폭력행위처벌법 §3④1호 // 1년-12년)

-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누범·특수폭행	2월-1년2월	4월-1년10월	6월-2년4월

② 누범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 §3④1호 // 1년-12년)

- 협박범죄 - 0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누범·특수협박	2월-1년	4월-1년6월	6월-2년

③ 누범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 §3④1호 // 1년-12년)

-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누범특수손괴	6월-1년6월	10월-2년6월	1년6월-4년

2) 형량 분포

▣ 특수주거침입(합계 56건)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1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특수건조물침입	수	-	-	1	2	-	8	3	-	-	-	-	-	-	-	14
	비율	-	-	7.1	14.3	-	57.2	21.4	-	-	-	-	-	-	-	100.0
특수주거침입	수	-	-	-	8	-	13	7	2	2	-	-	-	1	-	33
	비율	-	-	-	24.2	-	39.4	21.2	6.1	6.1	-	-	-	3.0	-	100.0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집단·흥기등주거침입)	수	-	-	-	-	-	4	-	2	3	-	-	-	-	-	9
	비율	-	-	-	-	-	44.5	-	22.2	33.3	-	-	-	-	-	100.0
전체	수	0	0	1	10	0	25	10	4	5	0	0	0	1	0	56
	비율	0.0	0.0	1.8	17.9	0.0	44.6	17.9	7.1	8.9	0.0	0.0	0.0	1.8	0.0	100.0

● 평균 형량(전체) : 6.98월

- 2016. 1. 6.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의 폭력행위 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사건(1년↑)의 경우 형법상 특수주거침입(5년↓)과 법정형이 다르기는 하나 형법상 특수주거침입죄와 행위태양이 유사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분석함
- 특수퇴거불응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음

■ 누범주거침입(합계 3건)

단위: 명, %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1	2	3	4	5	6	8	10	12	14	15	16	18	24	
폭력행위처벌법위반 (상습주거침입)	수	-	-	-	-	-	-	-	1	-	1	-	-	-	1	3
	비율	-	-	-	-	-	-	-	33.3	-	33.3	-	-	-	33.3	100.0
전체	수	0	0	0	0	0	0	0	1	0	1	0	0	0	1	3
	비율	0.0	0.0	0.0	0.0	0.0	0.0	0.0	33.3	0.0	33.3	0.0	0.0	0.0	33.3	100.0

● 평균 형량 : 1년4월

- 누범퇴거불응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음

■ 누범특수주거침입 - 사례 없음

3)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주거침입 등	-10월	6월-1년2월	1년-2년6월
2	누범주거침입 등	4월-1년	8월-1년4월	1년2월-3년
3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6월-1년6월	10월-2년	1년6월-3년6월

▣ 특수주거침입 등, 누범주거침입 등

- 평균형량(특수주거침입: 6.98월, 누범주거침입: 1년4월)이 기본 영역의 하한과 상한 사이에 위치하도록 하여 기본 영역 하한을 6월, 8월로 각각 설정하고, 형량분포, 유사 범죄의 양형기준, ‘01. 일반적 기준’ 과의 체계 정합성 등 고려하여 기본영역을 ‘6월-1년 2월’, ‘8월-1년 4월’ 로 각각 설정
- 특수주거침입, 누범주거침입 유형의 통계자료 상 최고형량은 1년6월과 2년이나, ‘01. 일반적 기준’ 의 주거침입 유형의 가중영역 상한이 2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 조정을 함 ⇒ 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가중 영역 상한을 2년 6월, 누범주거침입 유형의 가중 영역 상한을 3년으로 각각 설정하되 기본 영역과 일부 중첩이 되도록 가중 영역을 ‘1년-2년 6월’, ‘1년 2월-3년’ 으로 각각 설정
- 감경 영역은 형량분포범위, 유사 범죄 양형기준 등 고려하여 ‘10월 이하’, ‘4월-1년’ 으로 각각 설정

▣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선고사례 없으나, 법정형, 유사 범죄 양형기준, 체계 정합성 등 고려하여 감경 영역을 ‘6월-1년6월’, 기본 영역을 ‘10월-2년’, 가중 영역을 ‘1년 6월-3년 6월’ 로 각각 설정

V. 양형인자

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 ▣ 과거에 실제로 선고된 판결을 분석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를 추출하고 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함. 양형인자를 추출하거나 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규범적인 고려 요소도 적절하게 반영함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가. 대유형 1 일반적 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주거침입 등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1)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살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 감경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살인, 폭력,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과거 자신이 출입하던 다른 사람의 주거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수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가거나 쟁의행위를 위하여 사무실에 진입하는 등 주로 주거를 간수하는 사람의 추정적 승낙이 문제되는 사례 등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있음. 행위불법이 가볍다는 측면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고 있고, 실제로 다수 판결에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음
- 신체의 일부만 침입 : 창문에 손만 집어넣은 경우, 쇠창살 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뿐 경우 등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절도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의 경우 이를 독립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대문 안, 현관 출입문 앞에서 침입 시도 중 발각된 경우, 다가구 주택 내부 공용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주거 침입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
- 범행 발각 후 곧바로 퇴거 : 고시원 총무가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방실 침입하였다가 피해자 항의를 받고 즉시 퇴거한 경우, 열쇠를 이용하여 전에 살던 집에 침입한 직후 발각되자 스스로 집에서 나온 경우 등
- 침입 당시 주거 등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 : 낙찰 받은 건물에 남아 있는 점유자의 집기를 반출하기 위해 침입한 경우 등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⁶⁾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서의 범행
 - 범행 발각 후 곧바로 퇴거하여 주거 등에 체류한 시간이 매우 짧은 경우⁷⁾
 - 침입 당시 주거 등에 사람이 현존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무고, 공무집행방해, 체포·감금·유기·학대,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주거침입범죄의 경우에도 상당수 사례에서 범행의 동기 또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들고 있음. 그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와의 불륜을 의심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여 남편의 자동차를 수색하는 경우 등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유치권 분쟁 중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등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개 짖는 소리가 며칠째 심하게 들리자 주인이 개를 방치한 것으로 오인하여 개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주거에 침입하는 경우 등
- 양형인자의 정의

6) 신체의 일부만 침입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정신적 충격이 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신체 일부의 침입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여 감경인자로 반영함

7) 주거에 침입한 이상 범행이 기수에 이르므로 범행 발각 후 퇴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감경하기보다는, 주거 등 체류 시간이 매우 짧은 예외적 사례에 한하여 감경인자로 반영함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범행에 나아간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대부분의 범죄에서 ‘농아자’가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로 규정되어 있음
- 최근 개정된 형법(2020. 12. 8. 공포, 2021. 12. 9. 시행 예정)에서는, ‘농아자’를 대신하여 ‘청각 및 언어 장애인’ 또는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비록 개정 형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에서 사용되는 양형인자의 표현을 순화한다는 의미에서 개정 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선도적으로 사용함

※ 개정 형법(2021. 12. 9. 시행 예정)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책임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 양형기준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양형인자로 반영
- 다만, 형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음주 또는 약물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경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고의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성범죄 양형기준, 명예훼손 양형기준 등과 같은 서술식 기준을 추가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주거침입 등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감경인자(행위자/기타)로 반영함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대부분의 범죄에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2) 특별가중인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 유치권 행사, 업무방해 등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공범으로 주거침입을

하는 사례가 있고, 가담 정도가 양형요소로 감안되고 있음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 체포·감금·유기·학대, 업무방해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피해 정도가 중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에서 ‘상당한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체포·감금한 경우’, ‘체포·감금 과정에서의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를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시 규정을 참고함
-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일부 사례에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이를 불리한 사정으로 들고 있는 점을 반영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가 상당한 장시간 동안 지속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주거침입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 위계, 기망, 협박 등의 정도가 극히 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주거침입 등 범행이 반복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고 있는 실제 사례가 다수 조사됨
- 주거침입죄는 강요, 손괴죄와 마찬가지로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상습범이 가중 처벌되다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여 상습범 가중처벌조항이 삭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그런데 강요, 손괴죄의 양형기준에

서는 ‘상습범’을 별도의 가중인자로 규정하는 대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상습범에 해당할 수 있는 반복적 범행을 가중처벌하고 있음. 따라서 주거침입범죄에 대하여도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사기, 공무집행방해, 공갈, 방화, 체포·감금·유기·학대, 강요,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손괴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상당수 사례에서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를 불리한 사정으로 들고 있음.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음
 -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 : 성범죄, 절도 목적으로 침입하였으나 추가 범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등
 - 성적 목적을 위한 경우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다만, 목적인 범죄와 주거침입 등 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제외)⁸⁾
- 성적 목적을 위한 경우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8) 목적인 범죄와 주거침입범죄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범죄 목적으로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특별가중을 하게 되면 양형인자의 이중평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괄호 부분을 두어 적용범위를 제한함

- 대부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 동종 누범

- 폭력, 손괴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함

3) 일반감경인자

▣ 소극 가담

- 살인범죄, 성범죄, 폭력범죄, 공갈범죄 등 다수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함

- 양형인자의 정의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대부분 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감경인자
- 해당 및 반영 여부는 충실한 양형심리를 기초로 판단 가능
- 양형인자 정의 불필요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피고인과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 사이에 양형상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함
- 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에서와 같이 아래와 같은 정의 규정을 두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일정한 경우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공동주거침입, 공동퇴거불응을 별도의 소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각각의 기본범죄와 권고 형량범위를 동일하게 정하되, 공동범행에 따라 불법성이 가중되는 사정을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 폭력범죄의 양형기준에서도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 계획적인 범행

- 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고, 정의 규정도 기준과 동일하게 정함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폭력범죄 등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함

나. 대유형 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1유형)
일반양형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행위자/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유형 1과 동일한 서술식 기준 추가

※ 대유형 1 일반적 기준과 동일한 양형인자는 별도 설명이 없는 한 대유형 1 일반적 기준에서의 양형인자 설명이 그대로 적용됨 / 아래는 대유형 2에 고유한 양형인자(대유형 1과 논의가 다른 양형인자)에 대한 설명

인

▣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

- 퇴거불응의 경우 주거침입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고, 대 유형 1(일반적 기준)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별도 소유형으로 분류하고 주거침입보다 낮게 권고 형량범위를 정함
- 비록 대 유형 2(누범·특수주거침입)에서는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을 동일한 소유형으로 분류하여 권고 형량범위 자체는 같게 정하였으나, 양형통계 상 차이와 불법성의 정도 차이를 반영하여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함

▣ 동종 누범(1유형)

- 대 유형 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중 소유형 2 누범주거침입 등, 소유형 3 누범특수주거침입 등의 경우 이미 누범이라는 요소가 구성요건에 포함 되어 있고, 이를 고려하여 별도 소유형으로 분류한 후 권고 형량범위를 높게 정하였으므로, ‘동종 누범’을 다시 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대 유형 1 일반적 기준과 달리 대 유형 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에서는 ‘동종 누범’의 적용 범위를 소유형 1 특수주거침입 등으로 한정 하고, 이와 같은 취지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양형인자의 표시를 ‘동종 누범(1유형)’으로 함

VI.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례

▣ 절도죄와 경합범인 경우

-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대유형 1(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소유형 4(침입 절도)는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를 의미함. 그런데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제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음(2020 양형기준 책자, 147쪽)
- 이는 주거침입죄를 수반하는 일반 절도죄를 '침입절도' 유형로 포섭하여 주거침입죄를 수반하지 않는 절도죄보다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주거침입의 불법성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그럼에도 다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동일한 양형요소가 이중으로 평가되는 위험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한 것임
- 주거침입범죄의 양형기준에도 절도범죄 양형기준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어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침입절도' 유형에 규정된 권고 형량범위를 따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할 필요 있음
- 절도범죄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함

※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와 절도죄의 실제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절도범죄 양형기준의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의 권고 형량범위를 따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한다.

V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중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약물중독, 알콜중독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 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